

편집위원회 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제1조(총칙)

1. 본 위원회는 『독일어문학』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
2. 본 위원회는 한국독일어문학회 안에 둔다.

제2조(구성과 임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5인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부회장이 겸임하고, 간사는 편집상임이사가 겸임한다.
3. 편집위원은 다음 영역에서의 연구업적이나 학회활동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학자로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각 영역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 그 중 1인은 독문요약을 전담할 독일인으로 한다.
 - 1) 문학 영역: 독일어권 국가의 문학과 관련된 제반 연구
 - 2) 어학 영역: 독일어권 국가의 언어와 관련된 제반 연구
 - 3) 교육학 영역: 독일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연구
 - 4) 지역학 영역: 독일어권 국가의 지역 사정 및 문화 등과 관련된 제반 연구
 - 5) 기타 영역: 상기 4개 영역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연구
4. 편집위원의 임기는 회장단과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3조(기능)

1. 편집위원회는 『독일어문학』의 심사와 출판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한다.
2. 『독일어문학』 투고규정, 논문작성 양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회의)

1. 편집위원장은 『독일어문학』의 심사와 출판을 위해 편집회의를 주관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온라인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2.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제5조(학회지 발간지침)

1. 학회지 『독일어문학』은 문학, 어학, 교육학, 지역학, 기타 영역의 논문을 수록한다.
2. 『독일어문학』은 년 4회 발간되며, 원고 접수 마감과 발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 마감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제6조(투고자격)

1. 논문의 투고는 한국독일어문학회 회원에 한한다.
2. 투고하려는 회원은 투고년도와 전년도 회비가 미납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투고절차)

1. 논문은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와 논문파일을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3.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정의 재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투고자의 연구윤리)

1. 투고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이에 따른 투고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 연구윤리사항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자의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은 개인의 이론적 성향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게재 불가 판정을 할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심사가 끝난 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한다.
5. 심사위원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제보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 편당 4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4인 중 3인은 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결과를 기재해야 하며, 1인(독일인)은 독문요약심사만을 전담한다.
3. 『독일어문학』 편집규정이나 논문투고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 타 학회에 중복 투고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려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심사가 완료된 시점에 타 학회에 중복 투고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윤리 규정에 명시한다.
4. 투고된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및 평가된다.
 - 1) 연구주제의 창의성 (30점)
 - 2) 연구내용의 체계성 (30점)
 - 3) 연구결과의 기여도 (20점)
 - 4) 논문요약의 완성도 (10점)
 - 5) 논문투고규정 준수 (10점)

5.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되, 심사결과보고서에 다음 4개의 평가등급 중 하나로 심사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 A: 무수정 게재 (90점 이상)
 - B: 수정 후 게재 (89~70점)
 - C: 수정 후 재심사 (69~60점)
 - D: 게재 불가 (59점 이하)
6.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C: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당초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심사위원 1인에게 재심을 요청하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C: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당초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심사위원 2인에게 재심을 요청하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8. 심사위원 1인 이상으로부터 “D: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불허를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 2인이 “B: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투고자는 “D: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당초 심사위원이나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위촉한 심사위원 2인에게 재심을 요청한다. 재심받은 논문은 “B: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될 수 있다.
9. 재심받은 논문은 “B: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10. “B: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 파일을 송부하여 논문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한 수정사항 이행을 서면으로 답변한다.
11.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들을 수합하여 편집위원회를 열고, 수정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심사위원들의 게재 논문에 대한 긍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공정성, 수정요구사항 이행여부, 게재후보 논문 수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그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논문심사의 예외)

초청 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

제12조(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한국독일어문학회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논문투고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문 공개 및 저작권 이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1월 27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